

【논문】

10~14세기 또 하나의 국제질서, ‘맹약’*

—고려와 북방민족을 중심으로—

허인욱**

【 차례 】

- I. 머리말
- II. 또 하나의 국제질서-맹약
- III. 고려와 북방민족 사이의 맹약
- IV. 맺음말

국문초록

맹약은 전근대시기의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설명하는 책봉·조공과는 별도로 중국의 주 무왕대부터 그 존재가 확인되는 동아시아의 또 다른 외교 방식이다. 맹약은 신명을 향해 삼혈을 하고 맹세문을 읽은 다음 약속을 다짐하는 의례를 수반한다. 그 핵심 요소는 약속 위반 시 천지신명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저사가 포함한다는 점, 배신을 방지하기 위한 인질의 교환 그리고 의제적 가족관계의 형성이었다. 거란과 송의 澶淵의 맹이나 송과 금의 소흥화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주요 정치세력 간의 외교질서는 맹약을 통해 결정되었다. 송과 거란 그리고 금은 대하와의 관계에서도 맹약을 활용하였으며, 국제질서에서 책봉과 조공의 한 축이라 할 수 있는 송도 蠻夷와의 관계에서 맹약을 활용하였다. 이는 맹약이 당시 국가 간의 위계를 정하는 데에 있어, 책봉·조공보다 더 널리 사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려 역시 국가 관계에서 맹약을 활용했는데, 이는 고려 건국 초기 후

* 이 논문은 2017년 6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열린 「10~15세기 동북아 정세와 한국의 대응: 역사적 재고찰」 집담회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전북대학교 사학과 부교수.

백제와의 인질 교환이나 신라와의 삼혈동맹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와 북방 민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려 군주가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을 때 궁궐 밖에 단을 쌓고 의례를 거행했는데, 이것은 거란이 후진 석경당에게 황제를 임명할 때 사용한 유목세계에서 맹약을 맺는 의례와 유사함을 볼 수가 있다. 고려와 여진 그리고 여진이 세운 금과의 관계에서도 맹약은 사용되었다. 9성 반환을 요청하는 여진 주장들이 단을 세우고 하늘에 고하면서 저사를 사용하거나, 금이 고려에 전형적인 맹약의 양식인 서표 제출을 요구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와 몽골 간에도 형제맹약이 체결되었는데, 몽골이 고려에 요구한 6사 또한 인질 교환이나 세폐 등 맹약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고려 왕실과 몽골 황실의 지속적인 혼인 관계를 통한 의제적 가족관계 유지는 맹약 질서의 대표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가 존재하던 10세기부터 14세기는 전반적으로 책봉·조공보다는 맹약이 국제질서에서 우선되는 것이 보편적인 시대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맹약은 책봉·조공에서 그 질서를 담아내지 못한 유목 세계까지 좀 더 넓은 범위의 세력들을 하나의 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해질 필요성이 존재한다.

주제어: 맹약, 국제질서, 책봉·조공체제, 유목체제

I. 머리말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이해하는 틀로 가장 큰 지지를 받는 것은 ‘冊封·朝貢體制’이다.¹⁾ 책봉·조공체제는 종주국과 부용국으로 나누고 종주국은 부용국을 책봉하고 부용국은 그에 대한 대가로 종주국에 조공을 한다는 것이다. 이 책봉·조공체제에서는 종주국을 중원에서 성장한 나라를 중심으로 삼고, 그 중원 국가를

1) 최근 중국에서는 ‘책봉·조공체제’보다는 ‘宗藩體制’ 또는 ‘宗藩關係’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서는 손성욱, 2023, 「20세기 전반 莊廷黻의 외교사 연구와 ‘宗藩關係’론」, 『學林』 51: 2023, 「중번관계론의 굴절과 내적 긴장」,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이승민, 2022, 「고려의 고구려 계승과 고려-요 ‘중번(宗藩) 관계에 관한 중국학계의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78 참조.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여러 국가와 민족들이 책봉과 조공을 통해 세계질서를 구축하였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전후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는데, 일본 학계에서 진행된 책봉체제론은 주로 唐代史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본인 학자들은 책봉체제가 당대에 이르러 완성되었고, 그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구현되었던 시기가 당대라고 믿었기 때문이다.²⁾ 청대를 전공한 서양학자 또한 중원에 위치한 국가를 중심으로 해 조공을 통한 동아시아 세계질서, 즉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가 구축된 것으로 이해했다.³⁾ 이 두 이론은 이후 책봉·조공체제라는 틀로 결합되었는데, 별 문제 제기 없이 학계에 수용되어 동아시아 세계를 이해하는 주류 학설로 자리매김했다.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천착했던 전해중은 책봉·조공관계를 조공을 중심으로, '전형적 조공관계'와 '준조공관계' 그리고 '비조공관계'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전형적 조공관계는 공물과 회사라는 경제적 관계, 封典을 비롯하여 양국 간의 의례적 형식적 관계, 상호 청병 및 출병이라는 군사적 관계, 年號·曆의 채용과 내정 간섭을 말한다고 하면서, 연호와 역의 채용은 그 가운데서도 정치적 종속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해중은 전형적 조공관계를 고려 말과 조선시대 명·청 관계(1368~1894)에서 찾으려 하면서 거란(요)·여진(금)·몽골(원)과의 관계(918~1368)는 조공 관계가 변질된 것으로 이해하였다.⁴⁾ 그는 스스로 청대의 조공 제도를 출발점으로 하여 그 이전 제도를 논의하였기 때문에 앞 시기에 대한 가설적인 견해는 보정되어야 한다는 언급을 후에 하기도 했다.⁵⁾ 후대의 틀로 앞 시기를 재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나, 책봉·조공관계를 동

2) 대표적인 학자로는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를 들 수 있다. 니시지마는 동아시아 세계가 문화적 중심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일원적인 정치세계였다고 본다. 그는 중국의 군주인 황제와 주변 여러 나라의 군주 사이에 관작의 수수를 매개로 하여 맺어지는 관계를 '책봉체제'라고 명명했다. 니시지마가 '책봉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62년에 발표한 「六-八世紀の東アゾア」(『岩波講座 日本歴史』2, 岩波書店)부터였다. 니시지마의 동아시아와 책봉체제 관련 글들은 西嶋定生, 2002, 『西嶋定生 東アゾア史論集』3권, 岩波書店에 재수록되어 있다.

3) 이에 대해서는 John K. Fairbank ed. 1968, 'A PRELIMINARY FRAMEWORK' "The Chinese World Order", Harvard University Press 참조.

4) 全海宗, 1974, 「韓中朝貢關係研究」,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26-58쪽.

5) 全海宗, 1992, 「나의 歷史 研究의 길」, 『韓國史 市民講座』10, 一潮閣, 143쪽.

북아 국제 외교의 중요한 기본 틀로 보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그런데 기존의 책봉·조공체제라는 틀이 가진 문제는 책봉을 해 주고 조공을 받는 '절대강자'는 늘 증원에서 건국한 국가라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기마다 국제질서는 항상 변화하고 증원국가가 늘 절대강자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 특히나 고려 전기는 “China among Equals”⁶⁾라고 표현될 정도로 국제관계에서 절대강자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였다. 증원에 위치한 송은 오히려 ‘야만’의 거란에 조공을 하거나, 금에 신하를 자처해야 할 정도였다. 당시 국제질서는 ‘야만’이라 치부하던 거란이나 금에 의해 좌우되던 시기였던 것이다.⁷⁾ 즉 고려시대 송 또는 북방 민족과의 국제질서를 조공과 책봉이라는 틀로 설명한 기존의 견해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견해에 따라서는 고려가 거란이나 금 등과 책봉·조공체제를 유지했다고 보기도 하지만, 거란이나 금과의 관계를 책봉·조공체제로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도 충분히 가능하다. 고려는 거란과의 책봉·조공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책봉·조공이론으로 이를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아울러 이 이론은 한자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당시 전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질서를 탐구해 볼 필요성이 요구되는 셈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고려시대 국제관계에서 또 다른 질서로 활용되던 盟約⁸⁾에 대해 살펴보고, 책봉·조공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고자 한다.

6) Morris Rossabi ed., 1983,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7) 윤영인은 맹약을 거론하며, 한족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고려와 서하(대하)가 송에 ‘조공’하고 ‘책봉’받는 기록에만 집착한다면, 다원적 국제관계에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며 실리 외교를 펴나간 고려와 대하의 국제적 위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고 하였다(윤영인, 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的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東洋史學研究』 101).

8) 맹약은 盟, 誓, 盟誓, 會盟, 權盟, 盟好 등으로 나타난다. 이 글에서는 맹약을 대표 용어로 사용하겠다.

II. 또 하나의 국제질서-맹약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던 외교방식 가운데 하나는 맹약이었다. 맹약은 중원에서는 周 武王代부터 그 존재가 확인된다. 『周禮』에는 맹을 주관하는 전문기관으로 ‘司盟’의 존재⁹⁾가 찾아진다. 맹이란 글자 자체는 해(日)와 달(月) 그리고 그릇(皿)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늘을 향해 그릇에 피를 담아 다짐하는 행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다. 후한대 許慎의 『說文解字』에는 “맹이란 희생물을 죽여 피를 마시며, 진주 쟁반과 옥그릇을 사용하여 소의 귀를 놓는다.”¹⁰⁾라고 되어 있다. 중국 남북조시대 梁의 劉勰(466~520)이 지은 『文心雕龍』에는 “맹이란 밝힌다는 뜻이다. 적색의 소와 백색의 말을 珠玉으로 장식한 祭器에 올려놓고 神明에 告하는 것이다. 옛날 하·은·주 3대의 제왕 때에는 詛盟이 없었고 때때로 誓가 필요할 때는 말로서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周가 쇠퇴하자 맹이 자주 행해졌다.”¹¹⁾는 내용이 찾아진다.

그 맹약을 맺는 형식과 관련해서는 『禮記集說大全』의 ‘約信曰誓 涖牲曰盟’이 참조된다. 믿음을 서로 약속하는 것을 ‘서’라 하고, 희생물에 임해서 하는 것을 ‘맹’이라고 하는데, 集說에는 “맹을 맺는 방법은 먼저 땅을 파서 네모난 구덩이를 만들고 구덩이에서 희생을 죽인 다음, 희생의 왼쪽 귀를 베어 珠盤에 담고, 또 피를 뽑아서 玉敦에 담고 피로 맹문을 쓴다. 맹문이 완성되면 삼혈하고 맹문을 낭독한 다음 희생을 구덩이 속에 넣고 맹문을 그 위에 얹어 놓은 다음 묻으니, 이것을 載書라고 한다.”¹²⁾고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詛辭, 즉 저주의 문구가 따른다. 이와 관련해서는 왕자 虎가 제후들과 맹을 맺으면서 말한, “만약 이 맹약을 어기는 자가 있다면, 明神이 벌을 내려, 그의 군대를 잃게 하여 나라를 보전하지 못하게 하며, 그의 현손에 이르기

9) 『周禮』 秋官6 司盟.

10)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7上, 皿部下.

11) 『文心雕龍』 祝盟 祝盟第十.

12) 『禮記集說大全』 曲禮下, ‘約信曰誓 涖牲曰盟’.

까지 노소할 것 없이 모두 재앙을 받을 것이다.”¹³⁾ 『춘추좌씨전』의 언급이 참고된다. 맹약의 명신은 천명을 주재하는 하늘의 밝은 신 또는 모든 신령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명신의 존재는 맹의 위반이 인간 사회의 규약 위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천도에 거역하는 죄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¹⁴⁾

기존의 연구에서는 맹서가 ‘盟誓의 緣起-遵誓要求-違盟惡果’¹⁵⁾ 순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기존의 연구를 참고해 맹약 의례의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순서	대분류	소분류	관련 설명
I	준비 작업		약속잡기
			땅 고르기와 土壇 쌓기
			참가국과 지위에 따른 자리 배정
II	盟書(盟辭)의 확정		副本 작성
III	희생의 준비와 取血	희생을 죽여 구덩이에 넣음	
		牛耳를 잡고 피를 받음	“卑者執之, 尊者泄之”
		歃血	
IV	盟書의 낭독과 처리	盟書 낭독	告神
		盟書 埋立	희생 위에 얹어 함께 묻음
V	사후처리 및 향연	拜盟	結盟 인사
		人質의 교환	背盟 방지
		盟書의 副本을 盟府에 보관	향후 대비
		향연 및 흠향	

[표 1] 先秦시대 盟誓 의식의 주요 절차

* 이 표는 田兆元の 『盟誓史』(廣西民族出版社·上海文藝出版社, 2000), 呂靜의 『春秋時期盟誓研究-神靈崇拜下的社會秩序再構建-』(上海古籍出版社, 2007), 김성규, 2015, 『誓書: 10-13세기 동아시아의 안전보장책』, 『中國史研究』 99, 72-73쪽을 통해 정리했다.

13) 『春秋左氏傳』 魯僖公 下 28年 5月 己酉.

14) 高戶 聰, 2010, 「「明神」の役割と性格に關する一考察」, 『日本中國學會報』 62.

15) 吳承學, 2001, 「先秦盟誓及其文化意蘊」, 『文學評論』 2001-1.

춘추시대의 맹약 의례의 순서를 보기 편하게 정리한 것으로 맹약 의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가 있다. 대략적으로 단을 쌓고 그 위에서 삼혈을 하며, 하늘에 서로의 맹서를 고하는데, 맹서문에는 약속을 어길 때는 저주가 따른다는 저사가 동반되었다. 이 가운데 삼혈행위는 동일한 피를 마심으로써 한 핏줄의 형제(친족)관계가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띤다. 맹서를 배신한 사람이나 국가에게는 맹서했던 저주가 이르도록 하는 주술적 힘이 삼혈한 피에 있다고 믿었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⁶⁾ 그리고 약속을 어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질 교환 또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절차는 당과 티벳(吐蕃) 사이에 있었던 長慶會盟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장경회맹은 821년에 있었던 당과 티벳 간에 맺은 맹약이다. 그 내용은 두 군주 간에 舅와 甥이라는 의제적 가족관계를 맺었으며, 서로의 경계를 지키고 상대국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것을 맹세하면서 이 맹약을 깨트리는 쪽이 재앙을 받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¹⁷⁾ 구생의 관계와 관련해 주목되는 것이 '和蕃公主'이다. 화번공주는 당이 비한족 정치체의 군주에게 출가시킨 이들로, 당대에 58명이 있었음을 거론한 연구도 있다.¹⁸⁾ 이들은 의제적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매개체이면서 한편으로는 인질의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의 존재는 맹약이 동아시아 지역 국가 간에 하나의 외교관계로서 이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맹약은 고려가 존재하던 10~14세기에도 나타난다. 먼저 거란의 太祖 耶律阿保機는 朱全忠이 後梁을 세우자 晉王 李克用과 형제맹약을 맺었다. 이극용의 아들인 後唐의 莊宗 李存勳이 사망하자, 야율아보기는 이극용과 맹약을 맺은 사실을 거론하며 河南天子, 즉 이존욱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¹⁹⁾ 또 太宗 耶律德光是 後晉의 석경당과 父子맹약을 체결하기도 했다.²⁰⁾

16) 이에 대해서는 이연승, 2019, 「중국 고대의 會盟儀禮에 나타나는 歃血에 대하여」, 『中國學報』 90 참조.

17) 『全唐文』 卷988, 「盟吐蕃題柱文」.

18) 이와 관련해서는 崔明德, 2005, 『中國古代和親史』, 人民出版社 참조.

19) 『新五代史』 卷72, 四夷附錄1 契丹 上.

20) 『舊五代史』 卷75, 晉書1 高祖紀1 清泰 元年 11月·『新五代史』 卷72, 四夷附錄1 契丹 上·『遼史』 卷

맹약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1004년에 있었던 거란과 송의 ‘澶淵之盟’이다. 당시 맹서문을 보자.

가-1) (景德 원년 12月월) 7일 병술에 대송황제가 삼가 거란황제궐하에 서서를 보냅니다.……風土之宜에 따라 군대에 쓰이는 비용을 도와 매해 견20만 필, 은11만 냥을 돕고,……변경지역에 접한 州와 軍은 각 변경을 지키며 양쪽 지역의 사람들이 서로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혹 도적이 (다른 쪽으로) 도주한다면 쌍방은 체류를 허락하거나 숨겨주어서는 안됩니다. (변경지역의) 농토에서 (작물을) 심고 수확하는데 있어서, 南朝(송)와 北朝(거란)는 소란을 피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양쪽의 모든 해자는 이전과 같이 유지할 수 있으며, 해자의 준설과 수리는 모두 (이전의) 일반적인 예를 따릅니다. 그러나 성곽과 해자를 새로 축조하거나 하천의 길을 파는 것은 불가합니다. 糶粟 외에 각기 요구하는 바가 없습니다. 반드시 협동에 힘써 요구히 지켜가길 바랍니다.……만일 이 맹약을 어기면, 나라를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²¹⁾

가-1)은 「宋眞宗誓書」로, 1004년에 거란과 송이 전연지명을 맺는 과정에서 작성된 맹서문의 내용이다. 澶淵之盟은 1004년에 宋에 침입한 거란의 聖宗과 이를 막기 위해 북상하였던 송의 眞宗이 澶州에 체결한 강화조약이다. 그 형식을 보면, 장경희맹 등과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서로 맹약을 맺으면서 그 맹약을 어겼을 경우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맹약의 내용이 이루어진 도입 부분과 그에 이어지는 거란에 대한 송의 세폐 제공 등의 약정을 확인한 부분, 그것에 대한 다짐을 적고 맹약을 위배할 경우에 천지신명, 조상, 자손 등의 이름을 걸고 해를 당할 것이라는 詛辭가 보인다.

그 내용은 주지하다시피, 송은 군비로 거란에 매년 비단 20만 필, 銀 10만 냥을

3. 本紀3 太宗 耶律德光 天顯11년 10월 甲子·11月 丁酉.

21) 七日丙戌 大宋皇帝謹致誓書于契丹皇帝闕下……沿邊州軍 各守疆界 兩地人戶 不得交侵 或有盜賊遁逃 彼此無令停匿 至於墾畝稼穡 南北勿縱騷擾 所有兩地城池 並可依舊存守 淘濼完葺 一切如常 卽不得創築城隍 開掘河道 誓書之外 各無所求 必務協同 庶存悠久……有渝此盟 不克享國(『契丹國志』卷 20, 「宋眞宗誓書」).

보낸다. 양국의 국경은 현 상태로 유지하고, 변경 지역에서의 농업 활동을 서로 방해하지 않으며 기존의 방어시설만을 유지하고 새롭게 쌓지 않는다. 양국의 포로 및 경계를 넘는 자는 서로 송환한다는 것 등이었다. 또 송 眞宗은 거란 성종의 모친을 叔母로 삼고, 양국은 형제의 교분을 갖는다는 의제적 가족관계를 맺었다. 물론 이러한 양국의 의제적 친연관계는 군주 간의 상하관계가 아닌 長幼의 구분으로 기준을 두었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평등한 입장인 것처럼 보이는 면이 없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송이 세폐를 매년 거란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거란 우위의 조약인 것만은 분명하다.

당시 송이 맹약을 통한 국제질서를 형성했고 이를 준수하려고 했음은 1016년에 고려에 보낸 조서에서도 확인된다. 고려는 관원을 보내 송과의 연합을 통해 거란을 압박하려고 했으나, 송은 자국이 거란과 盟好를 맺어 거란과 잘 지내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태평하게 지내고 싶다²²⁾는 문서를 보내며, 고려도 거란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답변을 전했다. 고려의 요청을 에둘러 거부한 셈이다. 이는 송이 맹약을 국제질서의 한 틀로 받아들였으며, 또 그것을 준수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38년이 지난 1042년에는 거란 興宗이 국력의 안정을 배경으로 後周의 世宗이 거란으로부터 탈환했던 연운 16주 가운데 關南 10현과 北漢의 옛 영토를 할양하라는 요구를 하였다. 거란은 송이 하를 공격하는 것과 전연의 맹약에서 맺는 조항을 위배하고 하북지역의 방어시설을 구축한 것을 명분으로 삼았던 것이다. 瀛州와 莫州를 포함하는 지역은 송의 북방 방어 전략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이 거란에 넘어간다면 하북지역이 거란의 군사 위협에 노출되는 위험을 안고 있었다. 송이 이 지역을 포기할 수 없었음은 물론이다. 송은 관남지역의 영토 할양 대신에 비단과 은을 각각 10만씩 세폐를 더 제공하는 것으로 거란의 요구를 매듭지었다. 거란의 요구에는 세폐의 증액과 왕실 간의 혼인 사안도 포함되어 있었다. 혼인은 의제적 가족관계를 맺는 맹약의 특징에 해당한다. 거란은 1042년에 맹약

22) 『高麗史』 卷3, 顯宗 6年 11月·『高麗史』 卷4, 顯宗 7年 正月 壬申.

을 다시 체결한 사실을 고려에 알려오기도 했다.²³⁾

송은 금과도 맹약을 맺었다. 『大金弔伐錄校補』을 보면, 「南宋誓書」·「回賜誓書」·「報進誓書及乞約束書」의 관련 문서²⁴⁾가 전한다.

가-2) 大宋皇帝가 大金大聖皇帝 곁하에 誓書를 전합니다. …양국 국경 인근의 주민에 대해 상호 침탈해서는 안 되며, 도적과 도망자들은 피차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변경 사람들과 연계하거나 이반시키거나 피어서 문제를 일으켜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만세토록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이 맹약을 어긴다면, 천지가 이를 규찰하고 신명이 조속히 양화를 내릴 것이니, 자손이 대를 잊지 못하고 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²⁵⁾

가-2)는 남송 宣和 5년(1123) 3월에 금에 보낸 「南宋誓書」의 내용이다. 서로의 국경을 침범하지 않고 도적이나 도망자를 숨겨주지 않으며, 변경 주민을 선동하거나 이탈시키지 않는 것을 약속하였다. 이 약속에는 천지와 神明에게 벌을 받아 자손과 사직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저사가 포함되어 있다. 맹약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금이 송에 보낸 「回賜誓書」에도 “진실로 이 맹약을 어긴다면, 천지가 이를 규찰하고 신명이 조속히 양화를 내릴 것이니, 자손이 대를 잊지 못하고 사직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²⁶⁾라는 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맹약에 해당한다.

남송과 금은 1142년에는 송이 금에 세폐로 은 25만 냥과 비단 25만 필을 바치고 淮水를 경계로 삼고 자손대대로 영원히 맹세의 말을 준수하겠다는 紹興和議를 맺었다. 당시 송은 何鑄 등을 보내 맹약을 체결했는데, 高宗은 자신을 ‘臣 構’로

23) 『高麗史』 卷6, 靖宗 8年 11月 辛卯.

24) 이 글에서 이용한 『大金弔伐錄校補』(佚名 編)은 金少英이 校補한 것으로, 中華書局, 2001을 이용하였다.

25) 大宋皇帝致誓書於大金大聖皇帝闕下……以風土之宜 助軍旅之費 每歲以絹二十萬匹·銀一十萬兩……兩界側近入戶不得交侵 盜賊逃入彼此無令停止 亦不得密切間諜 誘擾邊人……庶保萬世 苟違此約 天地鑒察 神明速殃 子孫不紹 社稷傾危(『大金弔伐錄校補』 「南宋誓書」).

26) 『大金弔伐錄校補』 「回賜誓書」.

표현하면서, 맹약을 어기면 明神이 죽이고 국가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저사가 포함된 서표를 같이 보냈다. 이에 금은 면류관과 圭玉 등을 하사하고 고종을 康王으로 봉하고 황제로 책봉하였다.²⁷⁾ 소흥화희는 송이 臣을 자처했다는 점에서 불평등한 면이 있었다. 이는 「남송서서」에 군주를 송은 '황제', 금은 '대성황제'로 달리 호칭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한 관계는 맹약에 의제적 가족관계와 같은 상대적으로 평등한 경우부터 군신 관계와 같이 수직적인 경우까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맹약은 송과 大夏(西夏),²⁸⁾ 송과 금 그리고 송과 蠻夷 사이에서도 행해졌다. 1006년에 대하의 李德明은 아장 劉仁鬪을 시켜 서표를 송에 보내 이를 盟府에 보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²⁹⁾ 앞서 언급했듯이 서표를 맹부에 보관하는 것은 맹약의 형식 가운데 하나에 해당한다. 1006년의 서표가 맹약이었음은 이덕명이 1016년에 송의 변신들이 맹약을 위반하고 도망간 자들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들어 송에 항의한 것³⁰⁾에서도 알 수가 있다. 영토침범이나 도망간 자들을 받아들이는 행위를 금한 소흥화희의 조건이 송과 대하 사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음을 볼 수 있다.

양국이 맹약관계였음은 李元昊대에 이르러 송에 보낸 서표를 통해서도 확인이 된다. 정식으로 건국하고 송과 전쟁에 돌입했다가 화의를 하고 '慶曆和約'을 맺었다. 다음을 보자.

가-3) 그 詞에 말하길, “양국이 화호를 잃은 지 7년이 되었소이다. 지금 立誓하니 盟府에 보관하기를 바라오. …… 옛 땅과 변경의 변한 거주지역에서는 중앙을 나누어서 경계로 삼고, 경계 내에는 성보의 축조를 허락해 주시오. 조정은 해마다 絹 13만

27) 『金史』 卷4, 熙宗 皇統 2年 2월 辛卯·3月 丙辰, 卷77, 列傳15 宗弼.

28) 大夏는 당항족이 세운 정권으로, 일반적으로 '西夏'로 지칭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대하', '大白高國', '白高大夏國'으로 자칭하였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대하'를 대표 국명으로 사용하였다.

29) 『宋史』 卷485, 列傳244 外國1 夏國上 景德 3年.

30) 『宋史』 卷485, 列傳244 外國1 夏國上 大中祥符 9年.

匹, 銀 5만 兩, 茶 2만 斤을 사여해 주시오.……지금 본국이 홀로 맹서의 글을 바치니 곧바로 誓詔를 반포하기를 바라오, 대대로 遵承하여 영원히 화호하는 것으로 삼겠소이다. 만일 君親之義가 없어지거나 臣子之心에 다른 생각이 생긴다면 宗祀가 길게 가지 못하고 자손이 재앙을 입을 것이오.”라고 했다.³¹⁾

이 서표는 1044년에 대하에서 송에 보낸 맹서이다. 1042년 가을에 송과 대하 사이에는 定川에서 대규모 전쟁을 했는데, 송의 패배로 끝났다.³²⁾ 이후 대하는 송에 매년 10만 필의 비단과 차 3만 근의 세사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을 내걸었다.³³⁾ 이어 이원호는 자신을 아들로 송의 인종을 父로 지칭하면서도 可汗과 같은 군주호인 兀卒(吾祖)을 자칭하며 칭신을 거부했다.³⁴⁾ 이 대치는 이후 대하가 명목적으로 칭신하는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양국 간에 맹약이 맺어졌다. 그 내용을 보면, 양국 간에 맺은 내용이나 형식이 앞서 살펴본 전연지맹이나 소흥화의와 차이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서로 화의를 하는 이유와 성보 축조 등을 경계 내에서만 할 것 등의 조건과 함께 약속을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종사가 멸하고, 자손이 재앙을 입을 것이라는 저사가 같이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송과 蠻夷의 맹약은 1003년에 生蠻³⁵⁾과 1175년에 靑羌의 奴兒結과 맹약을 맺었으며,³⁶⁾ 1045년에는 광서지역의 蒙赧 등과 맹약을 맺었다고 하여 이들을 서로 잡은 사례에서 볼 수 있다.³⁷⁾ 또 1008년에 강안현의 夷人들이 희생물을 잡고 송의 侍其旭에게 맹세한 사례, 1014년 2월에 오랑캐 수장 斗望 등이 송에 변경 침입을 앞겠다고 하면서 3마리의 희생을 죽여 맹서한 사례,³⁸⁾ 그리고 1074년에 長

31) 其詞曰 兩失和好 遂歷七年 立誓 自今願藏盟府……故地及它邊境蒼漠所居 乞畫中央為界 於界內聽築城堡 朝廷歲賜絹十三萬匹·銀五萬兩·茶二萬斤……今本國自獨進誓文 而輒乞俯頒誓詔 蓋欲世世遵承 永以為好 儻君親之義不存 或臣子之心渝變使 宗祀不永 子孫罹殃(『續資治通鑑長編』卷152, 慶曆 4年 10月 己丑).

32) 『宋史』卷11, 本紀11 仁宗 慶曆 2年 閏9月.

33) 『宋史』卷11, 本紀11 仁宗 慶曆 3年 4月 癸卯.

34) 『宋史』卷485, 列傳244 外國1 夏國上 慶曆 3年.

35) 『宋史』卷493, 列傳252 蠻夷1 西南溪峒諸蠻 咸平 6年.

36) 『宋史』卷496, 列傳255 蠻夷4 黎州諸蠻 淳熙 2年.

37) 『宋史』卷495, 列傳254 蠻夷3 環州 淳熙 2年.

寧 등 10郡의 8姓 및 武都夷가 모두 내부해 오자 提點刑獄 范百祿이 지은 誓文에 “敵血神天”이라고 표현한 사례, 1080년에 乞第와 納溪에서 맹약을 맺은 사례³⁹⁾ 등도 찾아진다. 이는 송 또한 주변의 종족이나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질서를 구축하고자 하였음을 말해준다.

맹약은 거란과 대하, 금과 대하 사이에서도 질서로 작용했다. 거란과 대하 사이의 맹약이 행해졌음은 1054년 7월에 대하의 李諒祚가 구혼을 청하고 10월에 거란에 서표를 올린 사례⁴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1124년 3월에 금의 王介儒 등이 대하를 방문해 入盟하고 표를 올린다면 거란의 옛 제도에 따라 서조를 내릴 것⁴¹⁾이라는 언급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이때 대하의 李乾順은 금에 서표를 보냈고 이에 금 태종 또한 서조를 보냈다. 거란과 대하 사이에 맹약이 질서로 작용했으며, 금 또한 이러한 전례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셈이다. 『금사』에는 거란과 대하는 ‘舅舅’ 관계, 금과 대하는 ‘君臣’ 관계⁴²⁾라는 언급이 나오는데, 이 또한 맹약에 여러 층위(hierarchy)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려가 존재하던 시기의 국제질서는 ‘책봉·조공’보다는 맹약이 우선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고려와 북방민족 사이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⁴³⁾

38) 『宋史』 卷496, 列傳255 蠻夷4 西南諸夷 大中祥符 7年 3月.

39) 『宋史』 卷496, 列傳255 蠻夷4 瀘州蠻.

40) 『遼史』 卷20, 本紀20 興宗 重熙 23年 7月 己巳·10月 丙辰.

41) 『金史』 卷134, 列傳72 外國上 西夏 天會 2年 3月.

42) 『金史』 卷134, 列傳72 外國上 西夏 天眷 2年.

43) 송과 거란 사이에 1004년에 이루어진 澶淵의 맹을 두 나라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으로 이해한 김성규는 이를 ‘和議體制’(金成奎, 2000, 『宋代の西北問題と異民族政策』, 汲古書院), 杉山正明은 ‘澶淵시스템’이라고 명명하였다. 스키야마는 이 시스템이 大夏(西夏)와 북송 사이의 경력화의를 맺는 데에도 기준이 되었으며, 이후 金·南宋·大夏 관계에서도 적용되었다고 보았다(杉山正明, 2005, 『疾驅する草原の征服者』, 講談社, 231-233쪽). 古松崇志도 ‘澶淵體制’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대등한 두 나라가 공존할 수 있게 된 계기로 이해했다(古松崇志, 2007, 『契丹·宋間の澶淵体制における国境』, 『史林』 90-1·2013, 「十~十二世紀における契丹の興亡とユーラシア東方の國際情勢」, 『契丹(遼)と10~12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荒川慎太郎·澤本光弘·高井康典行·渡辺健哉 編), 勉誠出版). 즉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澶淵의 맹이 이후 국제관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본문에서 살펴봤듯이 맹약은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기본적인 틀로 1004년 이전부터 꾸준히 활용되어 오던 것이다. 따라서 澶淵의 맹을 기준으로 삼아 그 이후의 동아시아 세계를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Ⅲ. 고려와 북방민족 사이의 맹약

앞서 동아시아에서 맹약이 빈번하게 맺어진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한반도에서도 맹약이 국가 간의 외교형식으로 이용되었다. 文武王 4년 8월에 응진성에서 文武王과 扶餘隆 사이에 맹약을 맺은 사례가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취리산 맹약’이라 부르는 것이다. 둘 사이의 맹약은 단을 만들고 흰 말을 잡고 맹약을 했는데, 천신과 산천의 신령에게 제사를 지낸 연후에 말의 피를 입가에 바르고 글을 지어 맹세를 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혼인으로 이를 약속하고 맹세로 이를 펼치며 희생을 잡아 피를 바르고 함께 시작과 끝을 도맡게 할 것이며, 재앙을 나누고 근심을 구할 것이며, 은혜를 형제처럼 할 것이다.……만약 어기거나 배반하여 그 덕을 갈라 군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움직여 변경을 침범하면 신명이 이것을 보고 백 가지 재앙을 바로 내리시어 자손은 기르지 못하고 사직은 잇지 못하고 제사는 끊어져 남는 것이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 등이 있다. 그리고 맹세가 끝난 다음 폐백은 단의 壬地에 묻고 맹세한 글은 大廟에 간직⁴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⁴⁵⁾ 앞서 살펴본 맹약을 맺는 단계를 모두 거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삼혈과 의제적 가족관계 그리고 배맹을 방지하기 위한 저사 등이 모두 존재하는 것이다. 즉 이는 고려 이전부터 맹약이 존재했었으며, 그렇다면 고려 또한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려가 맹약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은 태조 25년(942) 10월에 사신 파견과 함께 낙타 50필을 보내왔을 때, 태조가 거란이 발해와의 맹약을 언급하면서 외교를 단절한 것에서 확인이 된다.⁴⁶⁾ 고려 또한 국가 관계에서 맹약을 활용했다. 이는 후백제와의 관계에서 찾아진다. 고려와 후백제는 태조 8년(925)에 화친을 맺기 위해 인질을 교환했다.⁴⁷⁾ 이는 앞서 언급한 맹약의 여러 요소 가운데 인질 교환에 해

44) 『三國遺事』 卷1, 紀異1 太宗春秋公.

45) 취리산맹약과 관련해서는 鄭雲龍, 2009, 「就利山會盟 前後 新羅의 對百濟 認識」, 『선사와 고대』 31 등을 참조.

46) 『高麗史』 卷2, 太祖 25年 10月.

47) 『高麗史』 卷1, 太祖 8年 10月 乙亥.

당한다고 할 수 있다. 고려와 후백제의 관계가 맹약이었음은 태조 9년(926)에 인질로 온 견훤의 조카 眞虎가 사망하여, 고려와 후백제가 충돌했을 때, 신라 敬順王이 “견훤이 盟約을 어기고(違盟) 군사를 일으켰으니, 하늘도 반드시 돕지 않을 것입니다.”⁴⁸⁾라고 한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⁴⁹⁾ 경순왕은 맹약임을 분명히 하면서, 하늘도 돕지 않을 것이라는 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고려에서도 국제질서의 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음을 알려준다. 견훤도 일본과 교류를 원하는 글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1천 년의 盟約”⁵⁰⁾이라고 표기하였다.

당시 양국이 맹약 관계였음은 왕건이 견훤에게 보낸 문서에서도 확인된다. 견훤이 하늘에 맹세하여, “오늘부터는 영원히 기쁘게 화친할 것이며 만약 맹약을 어기면(渝盟) 신이 죽음을 내릴 것이다.”라고 했다거나, 삼혈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敵血未乾⁵¹⁾)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서 알 수가 있다. 맹약의 요소인 ‘저사’와 ‘삼혈’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왕건은 신라와도 맹약을 맺었는데, 이는 양국의 우호 유지와 사직 보전을 위해 신라와 삼혈동맹을 맺었음을 언급한 것⁵²⁾에서 엿볼 수 있다. 앞선 내용들은 고려를 비롯한 후삼국의 나라들이 맹약을 바탕으로 외교 관계를 구축했음을 알려준다.

고려와 거란의 관계 또한 맹약의 요소를 품고 있다. 이와 주목되는 점은 다음의 기록들이다.

나-1) 거란이 한림학사 張幹과 충정군절도사 蕭熟葛을 보내어 왕을 開府儀同三司·尙書令·高麗國王으로 책봉하였다. 장간 등이 西郊에 이르러 단을 쌓고 冊命을 전달하니, 왕이 예를 갖추어서 책봉을 받고 이에 크게 사면하였다.⁵³⁾

48) 『高麗史』 卷1, 太祖 9年 4月 庚辰.

49) 인질의 존재와 관련해서는 고려와 후진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940년 후진에서 고려의 質子 王仁翟을 돌려보낸 적이 있는데(『高麗史』 卷2, 世家2 太祖 23年 12月), 당시 후진이 거란과 맹약을 맺었음을 고려하면 이를 맹약의 형식에서 볼 여지가 없는 것도 아니다. 중원에서 성립된 국가와도 맹약을 맺었을 여지를 남기는 사례라 할 수 있다.

50) 『本朝文粹』 卷12, 「大宰答新羅返牒」.

51) 『高麗史』 卷2, 太祖 11年 正月.

52) 『高麗史』 卷2, 太祖 18年 12月 壬申.

나-1)은 고려 군주가 처음으로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는 의례를 서술한 글이다. 거란은 성종 15년(996)에 張幹 등을 보내 성종에 대한 책봉의식을 거행했다. 이때 고려는 서교에 壇을 쌓고 성종이 예를 갖추어 책명을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중원 국가와의 사이에 보이는 전통적인 책봉의 사례에서는 보이지 않는 형태이다. 교외에 단을 쌓고 책봉을 받는 경우는 이전의 송과의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것이 앞서 언급한 후진 석경당의 사례이다. 석경당은 거란군주인 야율덕광으로부터 大晉皇帝에 임명되었다. 석경당의 황제 임명은 가한이 가한을 임명하는 유목세계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⁵⁴⁾ 책봉의례에서 야율덕광은 의관을 벗어 석경당에게 주었으며, 석경당은 柳林에다가 단을 쌓고 군주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⁵⁵⁾ 석경당이 晉城 남쪽에 단을 쌓고 맹약을 맺고 야율덕광에 의해 황제위에 올랐음은 앞서 언급한 『新·舊五代史』와 『遼史』에서도 기재되어 있다. 고려 군주인 성종이 교외에 단을 쌓고 거란으로부터 책서를 받는 모습과 동일하다.

이 이후 후진의 석경당은 거란의 태종 耶律德光을 ‘父皇帝’라 불렀고, 거란의 태종은 석경당을 ‘兒皇帝’라고 호칭하면서, 집안사람들 사이의 예의와 같이 하였다. 의제적 가족관계를 맺은 것이다. 또한 석경당은 거란의 사신이 도착할 때마다 별전에서 배례하고 조칙을 받았으며, 연운 16주의 할양과 더불어 해마다 황금과 비단 30만을 보내기로 약속을 맺었다.⁵⁶⁾ 이 때문에 후진의 ‘황제’ 석경당은 거란의 칸을 아버지로 섬긴 “거란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는다[nothing more than a puppet of the Khitan]”⁵⁷⁾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53) 契丹遣翰林學士張幹·忠正軍節度使蕭赫來 冊王 爲開府儀同三司·尚書令高麗國王 幹等至西郊 築壇傳冊 王備禮受冊 乃大赦(『高麗史節要』卷2, 成宗文懿大王 15年 3月).

54) 이러한 사례로는 수 말기에 돌궐이 한족 가운데 황제를 참칭한 薛舉·竇建德·王世充·劉武周·梁師都·李軌·高開道 등에 대해 가한 칭호를 내려 준 것을 들 수 있다. 당시 설거 등이 돌궐에 대해 北面하고 신하를 칭한 것을 들 수 있다(허인욱, 2019, 「군주호(君主號)로 본 고려 전기의 대외인식」, 『고려의 국가의식과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145쪽).

55) 『資治通鑑』卷280, 後晉記1 高祖 天福 元年 11月 癸巳.

56) 『資治通鑑』卷281, 後晉記1 高祖 天福 3年 7月 辛酉.

57) Denis Twitchett·Klaus-Peter Tietze, 1994, “The Liao,”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Cambridge University Press, p.70.

이때의 책봉의례가 맹약이었음은 석경당을 이은 石重貴가 양국의 관계를 '맹약'으로 정의한 것에서 확인이 된다. 석중귀는 거란 군주에게 '稱孫'은 허용하면서 '稱臣'은 거부하기도 하였는데,⁵⁸⁾ 불평등한 관계를 청산하려는 태도였다. 이는 적어도 후진이 거란과 자국의 관계를 맹약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고려 군주가 단을 세우고 거란의 책봉을 받는 것 또한 맹약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을 듯하다.

단을 설치하고 거란으로부터 고려가 책봉을 받는 기록은 성종대에 그치지 않는다. 정종 9년(1043) 11월,⁵⁹⁾ 숙종 9년(1104) 4월⁶⁰⁾의 기록에서 찾아진다. 또 단의 존재를 언급하지 않았으나, 궁궐이 아닌 남교에서 책봉을 받은 사례는 문종 3년(1049) 정월,⁶¹⁾ 문종 9년(1055) 5월,⁶²⁾ 문종 11년(1057) 3월,⁶³⁾ 문종 19년(1065) 4월,⁶⁴⁾ 선종 2년(1085) 11월,⁶⁵⁾ 숙종 2년(1097) 12월,⁶⁶⁾ 숙종 5년(1100) 10월,⁶⁷⁾ 예종 3년(1108) 2월⁶⁸⁾ 등이 기록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이다.⁶⁹⁾ 고려 군주가 단에 올라 책봉을 받았음은 문종 11년 4월에 책봉 의례에 수고한 관리들을 치하하며 내린 조서의 '昇壇陪位官' 표현이나,⁷⁰⁾ 숙종 3년(1098) 정월 조서의 "其受冊日 接詔以下升壇執禮 內外諸色員僚"⁷¹⁾의 기록에서 증명이 된다. '승단배위관'의 존재나 '승단

58) 『資治通鑑』 卷283, 後晉記4 齊王 天福 8年 9月 戊子.

59) 『高麗史』 卷6, 靖宗 9年 11月 丁亥.

60) 『高麗史』 卷12, 肅宗 9年 4月 甲子.

61) 『高麗史』 卷7, 文宗 3年 正月 丙午.

62) 『高麗史』 卷7, 文宗 9年 5月 辛酉.

63) 『高麗史』 卷8, 文宗 11年 3月 乙酉.

64) 『高麗史』 卷8, 文宗 19年 4月 庚子.

65) 『高麗史』 卷10, 宣宗 2年 11月 己未.

66) 『高麗史』 卷11, 肅宗 2年 12月 癸巳.

67) 『高麗史』 卷11, 肅宗 5年 10月 乙卯.

68) 『高麗史』 卷12, 睿宗 3年 2月 丙午.

69) 이 가운데 문종 11년 3월, 문종 19년(1065) 4월(『高麗史』 卷8, 文宗 19年 4月 癸卯), 숙종 5년 10월, 숙종 9년(1104) 4월(『高麗史』 卷12, 肅宗 9年 4月 庚午)에는 태자도 남교에서 책봉을 받았다. 태자가 단에 올라 책봉을 받았음은 숙종 9년 4월의 '登壇受冊'이나(『高麗史』 卷12, 肅宗 9年 4月 庚午), 세자가 登壇之拜했다는 朴景緯의 「謝冊世子」(『東人之文四六』 卷3)에서 확인된다.

70) 『高麗史』 卷8, 文宗 11年 4月 丙寅.

71) 『高麗史』 卷11, 肅宗 3年 正月 丙寅.

집례', 즉 단에 올라 예식을 집행한다는 표현은 設壇이 기본이었음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문종 3년 정월의 책봉 조서에는 '白馬刑牲의 約을 잘 받들었다'⁷²⁾는 표현 또한 주목된다. '백마형생'은 삼혈과 저사가 동반되는 맹약의 상징적인 의례 행위이기 때문이다. 즉 단을 설치하고 책봉을 받는 의례는 책봉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맹약적 요소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고려와 거란의 맹약적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로는 성종이 그의 재위 14년(995)에 거란에 혼인을 요청해, 蕭恒德의 딸과의 혼인을 허락받은 것⁷³⁾에서도 볼 수 있다. 고려가 의제적 가족관계의 형성이라는 맹약의 요소를 이해하고 이를 외교관계에 적용하려 했기에 가능한 요구였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⁷⁴⁾ 이와 관련해 『요사』 고려전에서 사신의 고려와 대하가 거란과의 관계에서 國婚을 요청하여 거란에서 下嫁시켰다⁷⁵⁾는 언급도 도움을 준다. 고려뿐만 아니라 대하도 국혼을 요청했다는 것은 거란을 포함한 유목 기반 세계에서는 맹약이 일반적인 외교 형태였음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또한 전연의 맹이나 소흥화의 등에 적용된 영토문제에 대한 여러 조건들, 예를 들어 각각 자국의 영토를 지키며 서로 침범하지 말 것, 상대국으로 도주한 이의 체류와 도피를 허용하지 말 것, 경작을 서로 인정하고 이에 대해 피해를 주지 말 것, 기존의 방어시설은 유지하되 새로운 시설 설치 금지할 것 또한 고려와 거란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⁷⁶⁾ 이 또한 고려와 거란의 관계를 맹약 관계로 볼 여지를 준다.

거란이 고려에 중원지역 국가와 같이 책봉·조공 제도만을 고집하지 않았음은 현종 3년(1012) 4월에 현종의 친조를 요구⁷⁷⁾한 사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친조는

72) 『高麗史』 卷7, 文宗 3年 正月 乙巳.

73) 『高麗史』 卷3, 成宗 14年 末尾.

74) 허인욱, 2020, 「유목사회의 특성과 고려-거란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60, 65-69쪽.

75) 『遼史』 卷115, 列傳45 高麗.

76) 이에 대해서는 허인욱, 2013, 「고려·거란의 境界帶 변화와 그 운용에 관한 연구」, 『歷史學研究』 52 참조.

유목국가가 적국에게 절대적 복종을 요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습은 대하 등 유목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나 정치세력의 군주나 지도자가 거란에 친조한 사례에서 확인이 된다.⁷⁸⁾ 이제현은 고려와 거란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정종 4년(1038)에 거란의 馬保業이 온 이후에 다시 '權盟'을 회복했다⁷⁹⁾고 평가하기도 했다.

고려의 맹약 활용은 여진과의 관계에서 좀 더 명확히 나타난다. 현종 3년(1012)에 여진의 毛逸羅와 鉏乙豆가 부락 30개 성씨를 인솔하여 和州에 와서 和盟을 간청하므로, 이를 허락하였다⁸⁰⁾는 기록이나, 정종 10년(1044)에 동여진인 1천 45명이 '盟'을 요청했다⁸¹⁾는 기록에서 볼 수 있다. 이때의 '맹'은 '맹약'임이 분명하다. 여진과의 관계에서 맹약이 중요하게 활용되었음은 고려의 여진과의 무력 충돌에서 볼 수 있다. 두 정치세력 간에 무력충돌을 일으킨 것은 완안부의 성장으로 인해 고려 국경 지역의 여진인들을 흡수하면서, 완충지대를 두어 적대적인 세력을 막았던 지역방어체계가 붕괴되었기 때문이었다.⁸²⁾ 고려가 완안부의 세력 확대를 저지해야만 했던 것이다. 고려가 별무반을 동원하면서 양 정치체 간에 무력충돌이 이어졌고, 고려는 그곳에 9성을 설치하며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였다. 양 정치체의 충돌은 예종 4년(1109) 6월에 들어, 여진이 화해를 요청하면서 전환이 이루어졌다.⁸³⁾ 당시 두 정치체가 맹약을 바탕으로 관계를 설정한 것은 다음 기록을 통해 확인이 된다.

나-2) 행영병마별감·승선 최흥정과 병마사·이부상서 문관이 여진 추장 居巽伊 등에게 타일러 말하기를, “너희가 9성의 반환을 요청했으니 마땅히 이전에 했던 약

77) 『高麗史』 卷3, 顯宗 3年 4月.

78) 허인욱, 2020, 앞의 논문, 69-72쪽.

79) 『高麗史』 卷6, 靖宗 12年 5月 丁酉 '李齊賢贊曰'.

80) 『高麗史』 卷4, 顯宗 3年 閏10月.

81) 『高麗史』 卷6, 靖宗 10年 正月 庚戌.

82) 허인욱, 2024, 「여진, 夷狄에서 고려의 변경민으로: 『고려사』를 통해 본 고려의 여진 인식과 관리, 『만주연구』 37.

83) 『高麗史』 卷13, 世宗 4年 6月 乙酉.

속처럼 하늘에 대해 맹세하라(誓告于天.)”라고 하였다. 추장 등은 威州 성문 밖에 단을 설치하고 하늘에 맹세하여 말하기를(告天誓曰, “지금 이후 대대손손(九父之世)까지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해마다 조공을 바칠 것입니다. 이 맹세를 어긴다면(有渝此盟, 蕃土는 멸망할 것입니다.”라 하고 맹세를 마친 후 물러갔다.⁸⁴⁾

여진은 영토반환을 요구하면서 영토를 반환해 주면, 고려의 변경지역에서 어떠한 소란도 일으키지 않겠다는 맹세를 했다. 양국의 화해가 1109년 6월부터 논의되었음은 이달에 여진의 史顯이 황금과 良馬를 바치며, 선정전 문밖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화친을 요청하자, 예종이 웃으며 허락했다⁸⁵⁾는 『보한집』의 언급에서 살필 수 있다. 예종은 신하들과 이를 논의했는데, 다음 달인 7월 2일에 신하들에게 반환 여부의 가부를 물었고, 가하다는 대답이 돌아온⁸⁶⁾ 하루 뒤인 같은 달 3일에 史顯 등에게 9성을 돌려줄 것을 약속했던 것이다.⁸⁷⁾

고려는 여진 추장에게 9성의 반환을 위해 그들에게 맹세를 요구했다. 여진은 이를 받아들여 함주성 밖에 단을 쌓고 하늘에 맹세를 하였다. 여진이 하늘에 대해 맹세를 하였음은 「任懿墓誌銘」에서도 확인된다. 그 맹세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는 저주의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⁸⁸⁾ 하늘에 대한 맹세와 저사의 존재는 이 당시 고려와 여진의 관계가 맹약관계였음을 분명히 한다.

이후 여진과의 관계는 금이 건국되면서 변화가 발생했다. 이는 예종 12년(1117) 3월에 금이 고려에 보낸 문서의 大女眞 金國皇帝를 兄, 고려의 국왕을 弟로 표현하며 형제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한 기록⁸⁹⁾에서 살필 수 있다. 형제 관계, 즉 대등한 입장으로 표현되어 있기는 하지만, 금이 그동안 ‘父母之邦’이라 부르던 것을

84) 行營兵馬別監承宣崔弘正·兵馬使吏部尙書文冠諱女眞酋長居巽伊等曰 汝若請還九城 宜如前約 誓告于天 酋長等設壇威州門外 告天誓曰 而今已後 至于九父之世 無有惡心 連連朝貢 有渝此盟 蕃土滅亡 盟訖而退(『高麗史』 卷13, 睿宗 4年 7月 辛酉).

85) 『補閑集』 卷上, 睿王乾統七年丁亥.

86) 『高麗史』 卷13, 睿宗 4年 7月 乙巳.

87) 『高麗史』 卷13, 睿宗 4年 7月 丙午.

88) 『高麗墓誌銘集成』(改訂版) 「任懿墓誌銘」(金龍善 編, 翰林大學校·아시아文化研究所, 1997).

89) 『高麗史』 卷14, 睿宗 12年 3月 癸丑.

고려하면, 양국 관계가 금의 상대 우위로 설정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논의는 사신의 목을 베자는 데까지 이르렀으나, 金富儀는 한과 匈奴, 당과 돌궐이 서로 칭신하거나 공주를 시집보내며 화친한 사례 또는 송과 거란이 伯叔兄弟가 되어 대대로 화통하고 있는 사례 등을 거론하며, 국가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권도를 사용하여, 국가안전을 도모할 것을 건의하기도 했던 것이다.⁹⁰⁾ 군주에 대한 형제관계 설정은 9성 반환으로 맺어졌던 그동안의 고려 우위의 상하관계가 금 우위의 대등 관계로 새롭게 재편되어 가는 상황을 상징한다.

그런데 이 관계는 금이 고려에 誓表를 요구하면서 또 한 번 재조정되었다. 금은 인종 6년(1128) 12월에 고려에 司古德과 韓昉을 보내 고려에 서표 제출을 요구⁹¹⁾했던 것이다. 당시 금에 보낸 서표의 내용을 보자.

나-3) 11월에 胡仁穎을 금에 보내 새해를 하례하고, 盧令瑀와 洪若伊로 하여금 誓表를 바치게 했다. 표문에 이르기를, “……周官의 司盟 벼슬은 그 盟約하는 법을 관장하는 것으로, 邦國의 화합하지 않는 것과 만민이 명을 범하는 것을 맹세하여 그 미덥지 못한 것을 저주할 뿐이었습니다. 쇠퇴한 춘추시대에 이르러서는 여러 나라가 서로 시기하고 의심하여 진실한 마음을 보장하지 못하므로, 우선 맹세하는 일을 앞세웠습니다.……변경의 땅을 주시고 공물 바치는 법식을 일러 주셨으니, 귀국 조정이 다시 다른 사언이 없으니, 속국이 감히 탄마음이 있겠습니까. 엄중한 명을 거듭 내리시니 감히 공손히 받들지 않겠습니까. 君臣의 의리로 맹세하옵고 대대로 변경 제후의 직책을 닦겠습니다. 忠信한 마음을 밝은 해를 두고 맹세하리니 만일 변함이 있으면, 神이 장차 죽일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⁹²⁾

90) 『高麗史』 卷97, 列傳97 諸臣 金富儀.

91) 『高麗史』 卷15, 仁宗 6年 12月 壬申; 『金史』 卷125, 列傳63 韓昉.

92) 遣胡仁穎如金賀正 盧令瑀·洪若伊進誓表曰……竊以周官司盟掌其盟約之法 盟邦國之不協與萬民之犯命 而詛其不信而已 至於衰季春秋之時 列國交相猜疑 不能必於誠信 而惟盟誓之爲先 故詩人譏其屢盟……錫之以邊鄙之地 諭之以貢輸之式 朝廷更無於他故 屬國敢有於異心 而嚴命荐至 敢不祗承 謹當誓以君臣之義 世修藩屏之職 忠信之心有如皦日 苟或渝變 神其殛之(『高麗史節要』 卷9, 仁宗 7年 11月 丙辰).

이 서표는 김부식이 무신년, 즉 인종 6년(1128)에 작성한 것이다.⁹³⁾ 서표 제출과 관련된 논의가 나온 후로부터 대략 1년 정도 뒤에 보낸 것임을 알려준다. 그만큼 서표의 작성 및 발송에 대한 고민이 많았음을 뜻한다. 고려가 서표의 제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盟誓가 대부분 적국 사이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서로 의심하고 꺼려서 부득이하게 하는 것이며, 서표와 서조의 왕래가 양국 관계의 틀을 결정하지 모른다⁹⁴⁾는 생각에서였다.

고려는 가능한 논리적으로 금나라 사신들을 설득하고자 하였다. 『금사』의 한 방전에는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내용이 전한다. 한방이 고려 신하와 회담을 하였는데, 고려측에서는 거란과 宋을 섬기는 200년 동안 서표를 쓴 적이 없었음에도 변신의 예를 잃은 적이 없다면서 거란과 송에게 하던 것과 같은 예(同禮)로 금에게 예우를 하려고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그러면서 금이 고려에 거듭 맹서를 요구하는 것은 그러한 기존의 예를 어지럽히는 것이므로 서표의 양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논리를 폈던 것이다. 이에 한방은 巡狩하는 舜임금에게 제후가 조회를 했던 사례를 들어 서표를 보내는 것이 옳다는 점을 고려 신하에게 반박을 했고 결과적으로 고려로부터 서표를 제출하게 만들었다.⁹⁵⁾ 서표를 제출하기까지 양국의 치열한 논리 싸움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고려는 결국 서표를 제출해야만 했는데, 김부식이 작성한 이 서표에는 맹약을 관장하는 주의 司盟이 거론되었을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어긴다면 신에 의한 저주가 따를 것이라는 문구를 담았다. 맹약의 형식을 충분히 따랐음을 의미한다. 즉 이때의 양국 관계는 맹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서표 제출에 대해 추밀원에서 인종에게 올린 글을 보면, 고려에서 보낸 「謝保州表」에는 “온 나라가 즐거이 (공물을) 실어 보낼 것이며, 자손에게 전할 것을 영원히 맹세합니다. 하늘이 내려다보시니 오직 진실이며 다른 뜻은 없습니다.”라는 가벼운 표현을 했다고 하면서, 송과 대화가 거란과 금에 보낸 서표의 내용을 거론하기도 하였다.

93) 『東人之文四六』 卷3, 事大表狀 「誓表」.

94) 『高麗史』 卷15, 仁宗 6年 12月 甲戌.

95) 『金史』 卷125, 列傳63 韓昉.

이들 나라가 보낸 서표에는 모두 “만약 이 맹세를 어긴다면 사직이 기울고 위태로워질 것이며 자손이 끊어질 것입니다.”라든지 또는 “천지신명이 죽음을 내릴 것이며 나라도 보전하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언급이 있었다고 하면서 이런 말들은 이미 우호의 맹세를 영원히 도탑게 하는 것으로, 절대로 번복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⁹⁶⁾ 이승휴는 『제왕운기』에서 그가 式目執事가 되어 都監에서 금의 조서 2통을 봤는데, 서문에 “대금금황제가 고려국황제에게 글을 보냅니다.”라는 글이 있음을 들면서 이것이 형제를 맺은 확실한 증거로 이해했다.⁹⁷⁾

당시 양국관계가 어떻게 규정되었는지는 김부식의 인종에 대한 “詞臣이 글을 지을 때 혹 北朝를 가리켜 胡狄이라 하면 곧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어찌 신하로 대국을 섬기면서 오만하게 칭함이 이와 같은가.’라고 하였다. 마침내 이렇게 해마다 歡盟하니 변경에는 아무런 우환이 없게 되었다.”⁹⁸⁾는 평가를 통해 알 수가 있다. 김부식이 서표를 작성한 인물임을 고려하면, 이때의 고려와 금의 관계는 맹약 관계였다고 이해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물론 금도 서표를 제출한 고려에 대한 대우에 변화를 주었다. 그 변화는 인종 20년(1142) 5월부터 고려 군주가 남교가 아닌 宣慶殿에서 조서를 받게 된 것이다. 『고려사』에는 이와 관련해 “故事에 책명을 받을 때는 반드시 南郊에서 했는데, 지금 完顏宗禮 등은 조정의 지휘를 받들어 처음으로 왕궁에서 조서를 반포하였다.”⁹⁹⁾고 서술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고사는 고려와 거란의 관계에서 벌어진 남교에서 이뤄진 책봉의례를 말한다. 즉 금은 고려와의 관계에서 거란의 책봉의례보다 고려 군주에 대해 우대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맹약의 모습은 고려와 몽골과의 관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고려와 몽골이 고종 5년(1218) 12월에 몽골 元帥 哈眞과 札刺가 거느린 병사 1만 명과 東眞의 포선만 노가 보낸 完顏子淵의 병사 2만 명과 함께 거란유종을 치겠다고 고려 경내로 들

96) 『高麗史』 卷15, 世家15 仁宗 6年 12月 甲戌.

97) 『帝王韻紀』 卷上, ‘結爲兄弟通信使’

98) 『高麗史』 卷17, 仁宗 24年 2月 丁卯 ‘史臣金富軾贊曰’.

99) 『高麗史』 卷17, 仁宗 20年 5月 戊午.

어와 조충과 찰라 사이에 ‘兄弟盟約’을 맺었던 것이다. 고종 5년에 있었던 이 맹약을 국가 간의 합의로 볼 것인지 또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¹⁰⁰⁾ 다만 맹약을 맺은 이후에 고려가 해마다 공부를 바칠 것을 청했다거나,¹⁰¹⁾ 쿠빌라이가 고종 사망 후 원종을 고려군주로 삼은 뒤 준 제서에 고려 내에 난이 일어나 맹약을 위반했다거나(渝盟, 맹약을 정한 것(定盟)을 어지럽히지 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¹⁰²⁾에서 국가 간의 합의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일 듯하다. 당시 대외관계에서 맹약을 몽골이 기본으로 생각했음은 금의 장군 耶律留哥와도 맹약을 맺은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몽골의 알치 노안(按陳那衍)과 야율유가가 金山에서 흰말과 흰소를 희생시킨 후, 높은 곳에 올라 북쪽을 바라보며 활을 부르뜨리는 행위를 하며 맹약을 맺었던 것이다.¹⁰³⁾

몽골은 자국에 예속된 국가나 정치체들에 대해 여러 가지 요구를 하였다. 일반적으로 ‘六事’라고 불리는 것들이 그것이다. 고려에 요구한 6사는 ‘納質·籍民·編置郵·出師旅·轉輸糧餉·補助軍儲’¹⁰⁴⁾ 또는 ‘納質·出師旅(助軍)·輸糧·設驛·供戶數籍·置다루가치(達魯花赤)’¹⁰⁵⁾였다. 여기에 몽골은 ‘친조’도 지속적으로 고려에 요구했다.¹⁰⁶⁾ 6사는 책봉-조공 관계 외의 요소로,¹⁰⁷⁾ 유목정치체들이 다른 정치체에게 요구하는 일반적인 항목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6사는 맹약의 요소로 이해해 볼 수도 있다. 납질은 인질의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살필 수가 있으며, ‘전수양향’은 거란이나 금이 송에 요구한 세폐와

100) 형제맹약에 대해 상대적으로 평등한 관계 또는 군신관계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異論이 있기는 하지만, 양국의 장수끼리 맹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이후 양국 관계에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101) 『元高麗紀事』 太祖 13年 戊寅.

102) 『高麗史』 卷25, 元宗 元年 4月 丙午·『元史』 卷208, 列傳95 高麗.

103) 『元史』 卷149, 列傳36 耶律留哥.

104) 『高麗史』 卷26, 元宗 3年 12月 乙卯.

105) 『高麗史』 卷26, 元宗 9年 3月 壬申.

106) 허인욱, 2019, 「高宗代 몽골의 親朝 요구와 고려의 대응」, 『전북사학』 56.

107) 이익주, 2011, 「고려-몽골관계에서 보이는 책봉-조공관계 요소의 탐색」, 『13~14세기 고려-몽골 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같이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질자의 존재는 王綽과 같은 고려 왕족들이나 고위관직자들의 자제가 투르카[秃魯花]으로 몽골에 가서 숙위를 하는 것에서 볼 수가 있다. 왕순을 고종의 친자로 받아들인 우구테이는 '一家之約'을 맺은 것¹⁰⁸⁾으로 이해하기도 했다. 여기에 친조는 거란이 이웃 국가나 정치체들에게 요구한 것이었으며, '조군'은 거란이 완안부 여진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고려에 군사요청을 하고 있는 것¹⁰⁹⁾과 비교해 볼 수 있다. 즉 맹약에서 행해지던 여러 요소들이 6사라는 형태로 정비된 것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고려와 몽골의 관계에서 주목되는 맹약적 측면은 주지하다시피 고려와는 1274년에 세자 王誥[충렬왕]과 쿠빌라이의 친딸 쿠틀룩 켈미시[忽都魯揭里迷失]와의 혼례를 시작으로, 공민왕대까지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의제적 가족관계를 꾸준히 유지했다는 점이다. 몽골이 옹구트 왕가나 위구르의 이드쿠트[亦都護] 등과도 혼인을 통한 의제적 가족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이 참고된다.¹¹⁰⁾

고려시대 맹약이 국제관계에서 이용된 사실은 문종 34년(1080)에 일본의 미나모토노 쓰네노부[源經信]가 고려와 일본의 교류에 대해 오랜 기간 맹약을 맺어왔으나, 중고 이래로 조공이 단절되었다¹¹¹⁾고 한다거나, 우왕 2년(1376) 10월에 일본 승려 周佐가 고려에 왜구의 단속을 약속하면서 하늘에 맹세하고 해를 가리킨 것¹¹²⁾에서도 살필 수 있다.

IV. 맺음말

맹약은 중국의 주 무왕대부터 존재가 확인되는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외교 방

108) 『東文選』 卷26, 「除宰臣任景肅蔡松年金敞趙敦樞密院使崔璘麻制」.

109) 『東文選』 卷39, 表箋 「回宣諭助伐女眞表」.

110) 이에 대해서는 森平雅彦, 2013, 「高麗王家とモンゴル皇族の通婚關係に關する覺書」, 『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 名古屋大學出版會 참조.

111) 『帥記』 白河天皇 承曆 4年 閏8月 5日.

112) 『高麗史節要』 卷30, 禎王 2年 10月.

식으로, 신명을 향해 삼혈을 하고 맹세문을 읽은 다음 약속을 다짐하는 의례를 수반했다. 맹약의 핵심 요소는 약속 위반 시 천지신명에게 벌을 받을 것이라는 저사를 포함한다는 점과 배신을 방지하기 위해 인질을 교환하고 의제적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이었다. 거란과 송의 澶淵의 맹이나 송과 금의 소흥화의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주요 정치세력 간의 외교질서는 맹약을 통해 결정되었다. 송과 거란 그리고 금은 대화와 맹약을 맺었으며, 국제질서에서 책봉과 조공이라는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할 송도 거란이나 금 외에 이웃하고 있는 蠻夷와의 관계에서 맹약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는 적어도 이 시기는 맹약이 책봉·조공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있다.

고려 역시 국가 관계에서 맹약을 활용했다. 이는 고려 건국 초기 후백제와의 인질 교환이나 신라와의 삼혈동맹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려와 북방 민족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려 군주가 거란으로부터 책봉을 받을 때 궁궐 밖에 단을 쌓고 의례를 거행한 것은 거란이 후진 석경당에게 황제를 임명할 때 사용한 유목세계에서 맹약을 맺는 의례와 유사함을 볼 수가 있다. 고려와 여진 그리고 여진이 세운 금과의 관계에서도 맹약은 사용되었다. 9성 반환을 요청하는 여진 추장들이 단을 세우고 하늘에 고하면서 저사를 사용하거나, 금이 고려에 전형적인 맹약의 양식인 서표 제출을 요구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려와 몽골 간에도 형제맹약이 체결되었는데, 몽골이 고려에 요구한 6사 또한 인질 교환이나 세폐 등 맹약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더불어 고려 왕실과 몽골 황실의 지속적인 혼인 관계를 통한 의제적 가족관계 유지의 맹약 질서의 대표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조금 더 고민이 요구되지만, 고려가 존재하던 10세기부터 14세기는 책봉·조공보다는 전반적으로 맹약이 국제질서에서 우선하는 시기였음은 확인할 수가 있다.¹¹³⁾ 또한 맹약은 증원과 그 주변만을

113) 동아시아 맹약의 여러 사례를 살펴본 이재석은 시론적이지만, '책봉·조공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조공·맹약체제'라는 용어를 제안하기도 했다(이재석, 2020, 「고대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관계와 맹약」, 『전통시대 사행으로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 동북아역사재단). 하지만 맹약 자체에 세폐의 제공이 있음을 고려하면 '맹약체제'라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전근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 별도의 글을 통해 진행하도록 하

대상으로 해서 국제질서를 이해하는 책봉·조공보다도 더 넓은 유목 세계까지 포괄하여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좀 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참고문헌

1. 사료

『高麗史』

『高麗史節要』

『三國遺事』

『東文選』

『帝王韻紀』

『東人之文四六』

『文心雕龍』

『舊五代史』

『新五代史』

『遼史』

『金史』

『元史』

『宋史』

『契丹國志』

『全唐文』

『資治通鑑』

『續資治通鑑長編』

『帥記』

『補閑集』

金龍善 編, 1997, 『高麗墓誌銘集成』(改訂版), 翰林大學校아시아文化研究所

佚名 編·金少英 校補, 2001, 『大金弔伐錄校補』, 中華書局

2. 단행본

金成奎, 2000, 『宋代の西北問題と異民族政策』, 汲古書院

김성규, 2020, 『송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와 외교의례』, 신아사

동북아역사재단·경북대학교 한중교류연구원, 2011, 『13~14세기 고려-몽골관계 탐구』,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한국고중세사연구소 편, 2019, 『고려의 국가의식과 동아시아』, 동북아역
사재단

全海宗, 1974, 『韓中朝貢關係研究』, 『韓中關係史研究』, 一潮閣

- Denis Twitchett·Klaus-Peter Tietze, 1994, "The Liao,"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rris Rossabi ed., 1983,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田兆元, 2000, 『盟誓史』, 廣西民族出版社·上海文藝出版社
- 呂靜, 2007, 『春秋时期盟誓研究-神灵崇拜下的社会秩序再构建-』, 上海古籍出版社
- 崔明德, 2005, 『中國古代和親史』, 人民出版社
- 西嶋定生, 2002, 『西嶋定生 東アジア史論集』 3권, 岩波書店
- 森平雅彦, 2013, 『モンゴル覇權下の高麗』, 名古屋大學出版會
- 杉山正明, 2005, 『疾驅する草原の征服者』, 講談社
- 古松崇志, 2007, 「契丹·宋間の澶淵体制における国境」, 『史林』 90-1
- 荒川慎太郎·澤本光弘·高井康典行·渡辺健哉 編, 2013, 『契丹(遼)と10~12世紀の東部ユーラシア』, 勉誠出版

3. 논문

- 손성욱, 2023, 「20세기 전반 莊廷獻의 외교사 연구와 ‘宗藩關係’론」, 『學林』 51
- 윤영인, 2007, 「10-13세기 동북아시아 多元的 國際秩序에서의 冊封과 盟約」, 『東洋史學研究』 101
- 윤유숙 편, 2020, 『전통시대 사행으로 본 동아시아 국제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이승민, 2022, 「고려의 고구려 계승과 고려-요 ‘종변(宗藩) 관계에 관한 중국학계의 인식」, 『동북아역사논총』 78
- 이연승, 2019, 「중국 고대의 會盟儀禮에 나타나는 敵血에 대하여」, 『中國學報』 90
- 鄭雲龍, 2009, 「就利山會盟 前後 新羅의 對百濟 認識」, 『선사와 고대』 31
- 허인욱, 2013, 「고려·거란의 境界帶 변화와 그 운용에 관한 연구」, 『歷史學研究』 52
- 허인욱, 2019, 「군주호(君主號)로 본 고려 전기의 대외인식」, 『고려의 국가의식과 동아시아』, 동북아역사재단
- 허인욱, 2019, 「高宗代 몽골의 親朝 요구와 고려의 대응」, 『전북사학』 56
- 허인욱, 2020, 「유목사회의 특성과 고려-거란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60
- 허인욱, 2024, 「여진, 夷狄에서 고려의 변경민으로: 『고려사』를 통해 본 고려의 여진 인식과 관리」, 『만주연구』 37
- 吳承學, 2001, 「先秦盟誓及其文化意蘊」, 『文學評論』 2001-1
- 高戶 聰, 2010, 「「明神」の役割と性格に關する一考察」, 『日本中國學會報』 62

■ Abstract ■

Covenant Diplomacy

: Goryeo and the Northern World, 10th-14th Centuries

Heo, In-Uk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the *Covenant* (盟約) as a diplomatic institution that shaped East Asian interstate relations from the tenth to the fourteenth centuries. With origins dating to early Zhou China, the *Covenant* involved ritual blood oaths (*saphyul*, 歃血), the reading of formal vows, and the invocation of divine punishment (*jeosa*, 詛辭) of its violators. It also entailed the exchange of hostages and the forging of fictive kinship ties that deterred betrayal and helped secure mutual trust.

Through close reading of historical records and diplomatic precedents, this study traces how such diplomatic ritual convention provided the framework for major agreements, including the *Covenant of Chanyuan* (澶淵之盟) between the Khitan and Song, the *Shaoxing Accords* (紹興和議) between the Song and Jin. These practices and arrangements extended across the region—from Daxia's covenants with Song, Khitan, and Jin to those linking Khitan, Jin, and Goryeo. Even the Song adopted the *Covenant* as a diplomatic tool for establishing a new world order, which it eventually perceived as more instrumental than the Tribute-Investiture System.

Seen from Goryeo's perspective, the *Covenant* was not merely a diplomatic arrangement imposed by its northern counterparts. It developed into a social convention—ritual oath, hostage exchange, and fictive kinship—aimed at balancing deference with autonomy and negotiating coexistence with neighboring empires. Interpreting these practices within the wider records of Song, Khitan, Jin, and Mongol diplomacy presents a new understanding of the *Covenant* as offering visions of an alternative political order—one grounded in reciprocity, ritual parity, and strict hierarchy. Therefore, while further study is needed, this reappraisal at-

tempts to reposition Goryeo at the center of a shared tradition that rivaled the logic of the Tribute-Investiture System.

Key words: Covenant diplomacy, world order, Goryeo, Song, Tribute-Investiture System, nomadic system